

제주지방법원 2022. 1. 26 선고 2020나1429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

---

## 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창곤

피고, 피항소인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봉

변 론 종 결 2021. 10. 20.

판 결 선 고 2022. 1. 26.

제1 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. 8. 10. 선고 2019가단4952 판결

## 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H 전 3391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 중

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공유지분에 따라 1993. 10. 18.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470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## 이 유

#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, 아래 2.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### 2. 고쳐 쓰는 부분

○ 제1심판결문 이유 2.의 나.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.

『나. 판단

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, 위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,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(대법원 2006. 2. 23. 선고 2004다29835 판결 등 참고).

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. 갑 제4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기재, 제1심 및 당심 증인 K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K는 J 앞으로 이 사건 등기가 마쳐질 당시 J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에 보증인으로 서명·날인한 자로서 제1심 및 당심에서 J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오래전부터 경작해 왔고 이 사건 토지가 J 소유이거나 J이 취득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보증서를 써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, ② K는 위 보증서 작성 경위, J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여부 등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거나 모순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와 같은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, K의 나이, 보증서 작성 시기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, ③ 위 보증서에

서명·날인한 다른 보증인 L은 그 작성의 보증서가 허위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확인서 작성 경위, L의 나이, 건강상태, 보증서 작성 시기 등을 고려하면, 위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이 반복된다고 보기 부족하고,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.』

### 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 판사 강 건, 판사 정양순, 판사 이범휘